

[주요약관내용]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때 계약금으로 운임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1)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물, 불결한 물품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등의 청구)

(1)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운임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제9조(계약해제) (제정경제부고시 04. 11. 1 시행)

(1)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2.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3.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4. 약정된 운송일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제10조(포장)

(1)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 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물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8조(책임의 특별 소명 사유와 시효)

1.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2.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가산 합니다.

3.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따릅니다.